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8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백선희 · 이해민 · 김선민
황명선 · 차규근 · 황운하
정준호 · 김재원 · 정춘생
이학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

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이 법”을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이 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죄”를 “범죄(제3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다.

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 및 수사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 죄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관련기관과의 협력) 군사경찰은 제5조제1항제3호의2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군사경찰은 <u>이 법</u> 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u>직무를 수행할</u> <u>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u> <u>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u> <u>이 법</u> -----.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 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 대의 장의 지휘·감독 하에 다 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감독) ① ----- ----- ----- ----- ----- 다 만, 제3호의2의 직무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 에 소속된 군사경찰이 수행한 다.
1. 2. (생략)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 에 규정된 <u>범죄</u> 의 정보수집· 예방·제지 및 수사	1. 2. (현행과 같음) 3. ----- ----- <u>범죄(제3호의2 각 목</u> <u>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한다)</u> - -----
<u><신설></u>	3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u>범죄의 정보수집·예방·제지</u>

4. ~ 8.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u>및 수사</u> <u>가. 「형법」 제2편제1장 및</u> <u>제2장의 죄</u> <u>나. 「군형법」 제2편제1장,</u> <u>제2장, 제80조 및 제81조의</u> <u>죄</u> <u>다. 「국가보안법」, 「군사</u> <u>기밀보호법」 및 「남북교</u> <u>류협력에 관한 법률」에</u> <u>규정된 죄</u> <u>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u> <u>법률」(「국가보안법」에</u> <u>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u> <u>「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u> <u>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u> <u>경우에만 해당된다)에 규</u> <u>정된 죄</u>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5조의2(관련기관과의 협력) 군</u> <u>사경찰은 제5조제1항제3호의2</u> <u>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u> <u>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u> <u>축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u>
--	---